

경상남도교육청-인천광역시교육청

업무협약서

경상남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(이하 “양 기관”)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교류 및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·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 등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 원칙)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.

제3조 (협력사항)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.

1.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발전 노력(언제나 책 읽는 학교, 읽건쓰 등)
2.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
3. 지역 문제해결·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협력
4. 그밖에 필요한 사항

제4조 (운영) 양 기관은 위 협력 사항을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며, 협력 사항 각호의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실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 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협약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·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 의무는 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속된다.

제6조 (협약 기간 및 변경·해지) 본 협약의 기간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지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 (기타 사항)

1. 본 협약서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본 협약이 상호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로서 법적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하며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3월 12일



교육감 박종훈



교육감 도성훈

